

19/20 에덴밸리리조트 프라임 시즌권 회원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에덴밸리리조트(이하 “에덴밸리”)가 모집하는 프라임 시즌권에 대한 에덴밸리 및 가입회원(이하 “회원”)의 의무와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즌권 종류)

1. 개인권: 에덴밸리 모든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즌권
2. 가족권: 개인권을 일가족(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

제 3 조 (시즌권의 적용)

1. 회원이 이용약관을 준수할 경우에 한하여 시즌권의 효력이 유효하다.
2. 회원은 19/20시즌부터 21/22시즌까지 회원라인을 포함한 리프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시즌권은 기명 시즌권으로서 본인이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시즌권과 관련하여 에덴밸리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에덴밸리는 시즌권 무료 재발급 및 무료 리프트권 제공 또는 할인 등의 의무가 없다.
5. 천재지변, 기상악화(강우, 강풍, 안개, 고온 등), 에덴밸리 영업정책(루지, MTB 등), 정부시책, 리프트 정비, 정전, 제설, 스키대회 등으로 일부 또는 모든 리프트 및 특정 슬로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객은 불가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에덴밸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유효기간
 - 가. 시즌권의 유효기간은 개장일로부터 1일 4시간 이상 개장일 기준 30일간이며, 유효기간 이후는 서비스기간으로 제공한다.
 - 나. 서비스기간 중에는 에덴밸리의 사정에 의해 그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7. 시즌권 케이스는 제외된 상품이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 4 조 (자격 및 권리/의무)

1. 회원은 예치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에덴밸리에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장정맥(손바닥 혈관) 정보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에덴밸리는 회원이 서명한 약관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예치금 증서를 발급한다.
3. 예치금 예치기간은 2022년 1월 말일 까지로 한다. (명의 양수자 포함).
4. 회원은 시즌권용 사진으로 여권사진에 준하는 사진(인화:칼라 고품질, 크기:가로3.5cm/세로4.5cm, 얼굴:정면 촬영, 상반신:어깨 이상, 눈동자:정면 응시, 액세서리:고글/썬글라스/모자 미착용)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미달 사진 제출 시 에덴밸리는 시즌권 제작을 거부할 수 있다.
5.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환불요구 및 재가입(해당 시즌 포함 세번째 시즌까지)을 할 수 없다.
 - 1) 명의 변경 절차 없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고객.
 - 2) 에덴밸리, 에덴밸리 직원 및 협력직원, 타 고객에게 불법·부당행위(욕설, 폭행, 대외적인 이미지 및 명예훼손, 등)를 한 고객.
 - 3) 불법사설강습 1회 이상 적발된 고객.
* 단속대상 : 스키장 내의 모든 강습행위에 있어 외부강습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4) 직원지시에 협력하지 않는 고객
 - 5) 타인의 명의로 시즌권을 신청 및 발급 받은 고객
 - 6) 시즌권 장정맥 등록 시 이용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정보로 등록한 고객

제 5 조 (구매 거부)

1. 구매 후라도 본 약관에 따라 구매 제한 고객의 경우 시즌권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제 6 조(시즌권 착용과 검사)

- 회원은 시즌권으로 리프트 이용 시 시즌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 검표원이 검표 시 고객에게 고글, 마스크 등의 장비 탈거를 요구하면 고객은 협조하여야 한다.
- 고객은 리프트 이용 전 무인 키오스크에서 장정액(손바닥 헬관) 인증 후 8시간 동안 시즌권을 이용 할 수 있으며, 8시간 이후에는 재 인증 후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명의 이전)

- 명의 이전은 가입 7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 명의 이전 개서료는 1인당 2십2만원이며, 시즌권 제작 후 명의이전 시에는 시즌권 제작비 2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명의 이전 시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을 하여 [명의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예치금증서와 시즌권을 반납하고, 양수자는 신분증 및 사진을 지참하여야 한다. 양도자가 방문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는 명의 이전 신청서 작성 및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중도 해지)

- 예치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전액 환불되고, 7일 이후부터는 위약금(예치금액의 10%)을 공제하고 반환된다.
- 시즌권 수령 후에는 위약금(예치금액의 10%)과 개장일로부터 반납일까지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반환된다. 1항, 2항에 따른 공제는 아래표와 같다.

기간	1년 차 공제율	2년 차 공제율	3년 차 공제율
미수령 시	10%	40%	70%
수령 후	개장 10일 이내	20%	50%
	개장 20일 이내	24%	54%
	개장 30일 이내	28%	58%
	개장 40일 이내	32%	62%
	개장 50일 이내	36%	66%
	개장 50일 이후	40%	70%
			94%

- 가족권 회원의 일부 인원만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나머지 인원의 예치금은 잔여 인원에 따른 권종의 예치금으로 변경되며, 나머지 금액에서 위 2항에 따라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된다.

제 9 조 (자격연장 및 예치금 반환)

- 에덴밸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원이 2021년 12월 말일 까지 반환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자동연장된다.
- 회원이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2월 말일 까지 서면으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 시 추가 예치금이 발생 할 수 있다.
- 회원이 반환을 원할 경우 2021년 12월 말일 까지 서면으로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에덴밸리는 2022년 1월 말일 까지 회원에게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시즌권 부정이용 시 시즌권은 회수되며, 예치금은 1항에 따라 반환된다.

제 10 조 (시즌권 재발급)

- 시즌권이 훼손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한하여 재발급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하다.
- 재발급은 에덴밸리 시즌권데스크에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 재발급에 소요되는 발급 수수료 2만원(시즌권 케이스는 별도 구입)은 재발급을 신청한 고객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재발급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 재발급하면 기존 시즌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에덴밸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1 조(시즌권의 부가혜택)

1. 에덴밸리는 판매 시 공지한 회원 부가혜택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스키시즌 중 회원에게 부가 혜택을 제공한다.
2. 회원은 부가혜택 이용 시 시즌권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변경 승인)

이용약관 또는 부가혜택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에덴밸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하며, 회원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서비스 또는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3 조(면책)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 시에는 에덴밸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4 조 (기타)

1. 천재지변, 기상악화(강우, 강풍, 안개, 고온 등), 에덴밸리 영업정책(루지, MTB 등), 정부시책, 리프트 정비, 정전, 제설, 스키대회 등으로 일부 또는 모든 리프트 및 특정 슬로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객은 불가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에덴밸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명의 도용, 공문서(주민등록등본 등) 위조 시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위·변조, 분실, 중지된 시즌권을 사용할 경우, 그 책임은 권리 없이 이용한 자가 진다.
4. 고객이 불법 양도 또는 대여한 시즌권을 제3자가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은 고객 및 권리 없이 이용한 자에게 있으며, 각자 시즌권 정상금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5.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르며, 에덴밸리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6.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한 소송은 에덴밸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7. 본 이용약관은 판매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주)에덴밸리리조트